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14호

2018. 12. 20.

건 명	명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참여예산실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11. 19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1. 19.

# 보 고 내 용

## □ 제안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「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」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우리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여 선정 투명성을 제고함(안 제2조)
- 나.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때는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소송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위임하고, 특정변호사에 대한 쏠림을 방지함.(안 제3조)
- 다.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및 실적,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. (안 제8조)

### □ 검토의견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「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」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